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7 선고 2021가단506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가문일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7. 31. 접수 제290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2924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1. ‘C은 원고에게 1,4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30.부터 2001. 12. 30.까지는 연 13%의, 그 다음날부터 2005. 9. 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0. 19. 확정되었다.

나. C은 2020. 7.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7. 31. 접수 제290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고,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C의 1997. 4. 4.자 대출로 인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 등을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채권의 추심 등은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C이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채권 추심 등을 위임받은 D 직원과 C은 1,400만 원을 변제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모든

채권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C이 2019. 3. 21.까지 1,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C의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종결되었다. 가사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채권의 추심 등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은 D 직원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표현대리에 따라 C의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3. 판단

원고가 D에게 C에 대한 일부 채권의 관리 및 추심 등을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채권의 추심 등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1.경 D 직원이 C 측에게 ‘1,100만 원에 비용 등을 플러스한 금액을 지급하면 채권은 종결처리되고, 원고나 예금보험공사의 C에 대한 채권은 D에만 위임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위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나 예금보험공사 채권으로는 D에서 관리하는 게 유일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C이 합의된 1,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C이 D 직원에게 이 사건 채권의 추심 및 면제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D 직원과 C 사이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이 사건 채권은 합의에 따른 1,400만 원의 지급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별지>

목 록

충청남도 서산시 아파트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1046.801㎡

2층 1013.277㎡

3층 1013.277㎡

4층 1013.277㎡

5층 1013.277㎡

6층 1013.277㎡

7층 1013.277㎡

8층 1013.277㎡

9층 1013.277㎡

10층 1013.277㎡

11층 1013.277㎡

12층 1013.277㎡

13층 1013.277m²

14층 1013.277m²

15층 1013.277m²

지하층 1036.923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29.38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대 20800m²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0800분의 67.09

- 이 상 -

